# 배임수재(인정된죄명뇌물수수)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17. 2013노2778]



#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항 소 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한웅재(기소), 차상우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정철승 외 1인

【원심판결】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8. 21. 선고 2012고정6082 판결

### 【주문】

1

제1심판결을 파기한다.

피고인을 벌금 1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### 【이유】

### 】1. 항소이유의 요지(사실오인)

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, 상품권 등을 받거나 주점에서 공소외 1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카드 결제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, 공소외 2,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었으며 2008. 4. 24.경 받은 50만 원은 디자인 작업을 하여준 데 대한 보수로 받았을 뿐이고,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.

### 2. 직권판단

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,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,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,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,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,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.

### 가. 주위적 공소사실

피고인은 1997. 1. 1.부터 1999. 7. 14.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, 1999. 7. 15.부터 2012. 2. 8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, 2012. 2. 9.부터 2012. 11. 20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.

한편 공소외 2,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,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(1) 피고인은 2010. 2.경 서울 중구 (주소 생략) ○○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. 4. 24.부터 2012. 2.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,000,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,000,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.
- (2) 피고인은 2010. 11. 16. 22:39경 서울 영등포구 (주소 생략)△△빌딩'□'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◇◇카드(카드번호 생략)로 주대 300,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. 1. 20.부터 2011. 2. 17.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,619,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,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.
  - 나. 예비적 공소사실
- 도로교통공단은 2007. 4. 2.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그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.
- 피고인은 1997. 1. 1.부터 1999. 7. 14.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, 1999. 7. 15.부터 2012. 2. 8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, 2012. 2. 9.부터 2012. 11. 20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.
- 한편 공소외 2,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,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.
- (1) 피고인은 2010. 2.경 서울 중구 (주소 생략) ○○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. 4. 24.부터 2012. 2.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,000,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,000,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.
- (2) 피고인은 2010. 11. 16. 22:39경 서울 영등포구 (주소 생략)△△빌딩'□'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◇◇카드(카드번호 생략)로 주대 300,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. 1. 20.부터 2011. 2. 17.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,619,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,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 [이유]

# 11. 항소이유의 요지(사실오인)

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, 상품권 등을 받거나 주점에서 공소외 1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카드 결제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, 공소외 2,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었으며 2008. 4. 24.경 받은 50만 원은 디자인 작업을 하여준 데 대한 보수로 받았을 뿐이고,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.

#### 2. 직권판단

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,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,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,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,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,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.

### 가. 주위적 공소사실

- 피고인은 1997. 1. 1.부터 1999. 7. 14.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, 1999. 7. 15.부터 2012. 2. 8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, 2012. 2. 9.부터 2012. 11. 20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.
- 한편 공소외 2,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,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.
- (1) 피고인은 2010. 2.경 서울 중구 (주소 생략) ○○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. 4. 24.부터 2012. 2.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,000,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,000,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(2) 피고인은 2010. 11. 16. 22:39경 서울 영등포구 (주소 생략)△△빌딩'□'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◇◇카드(카드번호 생략)로 주대 300,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. 1. 20.부터 2011. 2. 17.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,619,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,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.

나. 예비적 공소사실

- 도로교통공단은 2007. 4. 2.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그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.
- 피고인은 1997. 1. 1.부터 1999. 7. 14.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, 1999. 7. 15.부터 2012. 2. 8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, 2012. 2. 9.부터 2012. 11. 20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.
- 한편 공소외 2,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,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.
- (1) 피고인은 2010. 2.경 서울 중구 (주소 생략) ○○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. 4. 24.부터 2012. 2.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,000,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,000,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.
- (2) 피고인은 2010. 11. 16. 22:39경 서울 영등포구 (주소 생략)△△빌딩'□'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◇◇카드(카드번호 생략)로 주대 300,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. 1. 20.부터 2011. 2. 17.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,619,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,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# 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 [이유]

# 】1. 항소이유의 요지(사실오인)

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, 상품권 등을 받거나 주점에서 공소외 1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카드 결제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, 공소외 2,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었으며 2008. 4. 24.경 받은 50만 원은 디자인 작업을 하여준 데 대한 보수로 받았을 뿐이고,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.

### 2. 직권판단

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,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,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,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,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,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.

### 가. 주위적 공소사실

- 피고인은 1997. 1. 1.부터 1999. 7. 14.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, 1999. 7. 15.부터 2012. 2. 8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, 2012. 2. 9.부터 2012. 11. 20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.
- 한편 공소외 2,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,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.
- (1) 피고인은 2010. 2.경 서울 중구 (주소 생략) ○○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. 4. 24.부터 2012. 2.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,000,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,000,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.
- (2) 피고인은 2010. 11. 16. 22:39경 서울 영등포구 (주소 생략)△△빌딩'□'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◇◇카드(카드번호 생략)로 주대 300,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. 1. 20.부터 2011. 2. 17.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,619,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,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.

나. 예비적 공소사실

- 도로교통공단은 2007. 4. 2.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그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.
- 피고인은 1997. 1. 1.부터 1999. 7. 14.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, 1999. 7. 15.부터 2012. 2. 8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, 2012. 2. 9.부터 2012. 11. 20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.
- 한편 공소외 2,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,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.
- (1) 피고인은 2010. 2.경 서울 중구 (주소 생략) ○○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. 4. 24.부터 2012. 2.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,000,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워의 직무에 관하여 4.000.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.
- (2) 피고인은 2010. 11. 16. 22:39경 서울 영등포구 (주소 생략)△△빌딩'□'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◇◇카드(카드번호 생략)로 주대 300,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. 1. 20.부터 2011. 2. 17.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,619,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,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.

#### 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### 【이유】

# 11. 항소이유의 요지(사실오인)

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, 상품권 등을 받거나 주점에서 공소외 1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카드 결제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, 공소외 2,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었으며 2008. 4. 24.경 받은 50만 원은 디자인 작업을 하여준 데 대한 보수로 받았을 뿐이고,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.

### 2. 직권판단

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,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,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,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,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,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.

### 가. 주위적 공소사실

- 피고인은 1997. 1. 1.부터 1999. 7. 14.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, 1999. 7. 15.부터 2012. 2. 8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, 2012. 2. 9.부터 2012. 11. 20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.
- 한편 공소외 2,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,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.
- (1) 피고인은 2010. 2.경 서울 중구 (주소 생략) ○○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. 4. 24.부터 2012. 2.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,000,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,000,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.
- (2) 피고인은 2010. 11. 16. 22:39경 서울 영등포구 (주소 생략)△△빌딩'□'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◇◇카드(카드번호 생략)로 주대 300,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. 1. 20.부터 2011. 2. 17.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,619,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,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.

나. 예비적 공소사실

- 도로교통공단은 2007. 4. 2.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그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.
- 피고인은 1997. 1. 1.부터 1999. 7. 14.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, 1999. 7. 15.부터 2012. 2. 8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, 2012. 2. 9.부터 2012. 11. 20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.
- 한편 공소외 2,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,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.
- (1) 피고인은 2010. 2.경 서울 중구 (주소 생략) ○○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. 4. 24.부터 2012. 2.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,000,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,000,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.
- (2) 피고인은 2010. 11. 16. 22:39경 서울 영등포구 (주소 생략)△△빌딩'□'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◇◇카드(카드번호 생략)로 주대 300,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. 1. 20.부터 2011. 2. 17.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,619,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,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 [이유]

11. 항소이유의 요지(사실오인)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, 상품권 등을 받거나 주점에서 공소외 1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카드 결제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, 공소외 2,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었으며 2008. 4. 24.경 받은 50만 원은 디자인 작업을 하여준 데 대한 보수로 받았을 뿐이고,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.

### 2. 직권판단

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,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,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,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,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,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.

### 가. 주위적 공소사실

- 피고인은 1997. 1. 1.부터 1999. 7. 14.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, 1999. 7. 15.부터 2012. 2. 8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, 2012. 2. 9.부터 2012. 11. 20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.
- 한편 공소외 2,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,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.
- (1) 피고인은 2010. 2.경 서울 중구 (주소 생략) ○○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. 4. 24.부터 2012. 2.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.000.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,000,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.
- (2) 피고인은 2010. 11. 16. 22:39경 서울 영등포구 (주소 생략)△△빌딩'□'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◇◇카드(카드번호 생략)로 주대 300,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. 1. 20.부터 2011. 2. 17.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,619,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,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.

나. 예비적 공소사실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도로교통공단은 2007. 4. 2.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그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.
- 피고인은 1997. 1. 1.부터 1999. 7. 14.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, 1999. 7. 15.부터 2012. 2. 8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, 2012. 2. 9.부터 2012. 11. 20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.
- 한편 공소외 2,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,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.
- (1) 피고인은 2010. 2.경 서울 중구 (주소 생략) ○○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. 4. 24.부터 2012. 2.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,000,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,000,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.
- (2) 피고인은 2010. 11. 16. 22:39경 서울 영등포구 (주소 생략)△△빌딩'□'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◇◇카드(카드번호 생략)로 주대 300,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. 1. 20.부터 2011. 2. 17.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.619.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,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.

# 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 [이유]

- 】1. 항소이유의 요지(사실오인)
-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, 상품권 등을 받거나 주점에서 공소외 1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카드 결제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, 공소외 2,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었으며 2008. 4. 24.경 받은 50만 원은 디자인 작업을 하여준 데 대한 보수로 받았을 뿐이고,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.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### 2. 직권판단

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,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,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,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,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,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.

### 가. 주위적 공소사실

- 피고인은 1997. 1. 1.부터 1999. 7. 14.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, 1999. 7. 15.부터 2012. 2. 8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, 2012. 2. 9.부터 2012. 11. 20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.
- 한편 공소외 2,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,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.
- (1) 피고인은 2010. 2.경 서울 중구 (주소 생략) ○○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. 4. 24.부터 2012. 2.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,000,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,000,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.
- (2) 피고인은 2010. 11. 16. 22:39경 서울 영등포구 (주소 생략)△△빌딩'□'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◇◇카드(카드번호 생략)로 주대 300,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. 1. 20.부터 2011. 2. 17.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,619,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,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.
  - 나. 예비적 공소사실
- 도로교통공단은 2007. 4. 2.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그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.
- 피고인은 1997. 1. 1.부터 1999. 7. 14.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, 1999. 7. 15.부터 2012. 2. 8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, 2012. 2. 9.부터 2012. 11. 20.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 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.

- 한편 공소외 2,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,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.
- (1) 피고인은 2010. 2.경 서울 중구 (주소 생략) ○○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. 4. 24.부터 2012. 2.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,000,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.
-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,000,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.
- (2) 피고인은 2010. 11. 16. 22:39경 서울 영등포구 (주소 생략)△△빌딩'□'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'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'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◇◇카드(카드번호 생략)로 주대 300,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. 1. 20.부터 2011. 2. 17.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,619,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,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